

『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』
해외실증 및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모집 연장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, 청주시의 지원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日 Shonan iPark 실증거점에 입주하여 해외실증을 수행할 특구사업자, 신산업 책임보험 수요 기관·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7월
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충청북도지사, 청주시장, (재)충북테크노파크원장

I 개요

- **공 고 명** : 해외실증 및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모집 연장공고
- **목 적** :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강점을 지닌 일본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술 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
- **지원대상** :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로 지정되어 실증특례확인서를 보유한 자 ※ 공고일 기준 특구사업자 지정 必
- **지원규모**

No	지원분야	지원규모	지원금
1	해외실증	특구사업자 중 2개 기업 내외	190 백만원/년 내외
	비R&D 과제지원 글로벌 실증거점 입주지원		日 Shonan iPark 연구실 및 사무실 임대료
2	신산업 책임보험	특구사업자 기관·기업 22개 내외	6.3백만원 이내/기업당

- ※ 지원분야별 중복 지원 가능하며, 민간부담은 해외실증은 지원금의 15% 이상(현금 30% 이상), 신산업 책임보험은 지원금의 12% 이상(현금 100%) 매칭 필수
- ※ 해외실증 비R&D 과제는 입주기간 중 계속과제로 지원 예정이나, 26년 상반기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, 지원 기간, 연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※ 해외실증 선정기업의 日 Shonan iPark 연구실, 사무실 임대료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계약 후 일괄납부 형태로 지원
- ※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산정한 사업기간의 2/3 이상 해외 상주 및 출장 수행 필수(세부 내용 별도 안내)

1) 해외실증 지원

■ 지원내용 : 해외실증 비R&D 과제 및 실증거점 입주지원

해외 공동R&D 기반 “해외실증 비R&D과제지원”	해외실증 수행을 위한 “日 Shonan iPark 입주지원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외실증 수행을 위한 비R&D 지원 - 해외실증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(인건비, 시험비, 재료비 등) 지원 - 해외협력 네트워크(기술교류회, 세미나, 바이어매칭, IR 행사 등)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외실증거점 입주지원 (참고1) - 日 Shonan iPark 내 사무실, 오픈랩, 실험실 공간 제공(입주기업 공용) - 日 Shonan iPark Tenant 자격 부여에 따른 각종 네트워크 행사 연계 지원

※ 비R&D 과제 지원금은 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 내에서만 집행 가능 (참고2)

■ 지원절차 :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과의 협약체결 이후 사업수행 및 지원



※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日 Shonan iPark 입주심사를 받은 후 입주 기업 10개사에 공간 등 배정으로 진행됨

※ 상기 일정은 국내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
- (1차 심사(사전검토)) 필요서류 제출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지원적격성 여부검토
- (2차 심사(선정평가))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실증지원 신청서(국문/영문), 비R&D과제 수행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선정평가 (참고3)
- (3차 심사(입주심사)) 입주신청서(영문), 비R&D과제 수행계획서(영문 작성항목), 영문 제반서류는 日 Shonan iPark에 제공 및 현지 입주심사 추진

- (제출서류) 해외실증지원 신청서, 비R&D과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
 - 1. 해외실증지원 신청서는 원본, 나머지 서류는 사본 제출

구분	No	제출서류	국문	영문	제출형태	비고
과제 신청서	1	해외실증지원 신청서(국문/영문)	○	○	PDF/한글	서식 1-1, 1-2
	2	비R&D과제 수행계획서*	○	○	PDF/한글	서식 2
첨부 서류	3	사업자등록증	○	○	PDF	
	4	재무제표(최근 3개년) 국세청 홈택스 출력분,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	○	○	PDF	국세청 홈택스 출력분
	5	4대보험 가입자 명부	○		PDF	
	6	국세, 지방세 납부증명서	○		PDF	
	7	법인등기부등본	○		PDF	
	8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조회 동의서	○		PDF	서식 3
	9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○		PDF	서식 4
	10	청렴이행서약서	○		PDF	서식 5
	11	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	○		PDF	서식 6
	12	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이전 협약서	○		PDF	서식 7
	13	경영구조(이사회 구성원 정보 포함)	○	○	PDF/한글	서식 8
	14	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	PDF	서식 9
	15	기타서류 (해당업체에 한함) 국외출장 계획서, 외주용역 내역서,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등 연관서류 제품 카탈로그, 회사홍보자료(국문, 영문 등), 홍보동영상(국문, 영문 등) 등	○	○	PDF	해당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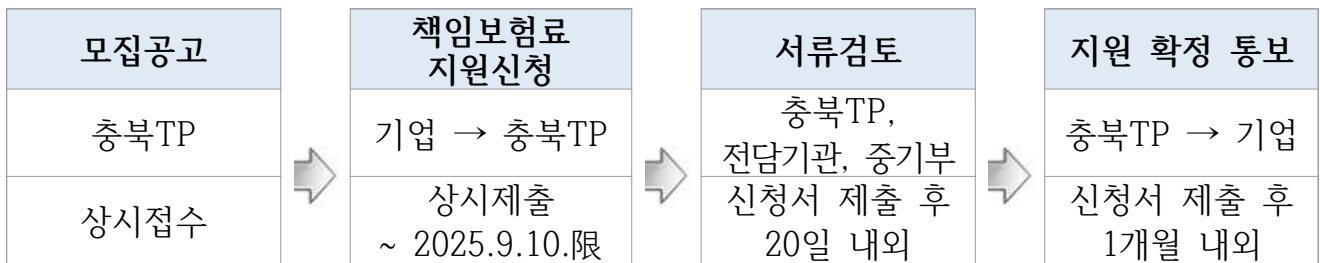
- 2. 수행계획서 내 사업비는 반드시 '보조세목' 기준으로 작성 (참고2)
- '외부기관 발급서류'는 수행계획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
- 제출서류가 '사본'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,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신청자 책임
-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함

* 비R&D과제 수행계획서 일부 항목은 日 Shonan iPark 입주심사를 위해 영문으로 추가 기재 필수

2) 신산업 책임보험

- 지원내용 : 2025.1.1.~9.10. 가입을 완료한 책임보험 가입료 최대 6.3백만원
- (개요) 특례와 관련된 국내 실증 개시 이전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필수, 이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
 - 법적 보상한도 : 대인 1.8억원, 사고당 10억원 적용
 - 보험 가입기간 : 실증 개시일 전부터 실증특례 만료일(2028.05.31.) 이후까지
 - ※ 지역특구법 제88조제2항, 제90조제14항, 제143조제1항의2(과태료), 동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 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 시 갱신하여 실증특례 만료일까지 보험 유지 필요
 - ※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에는 해당 특구사업자가 전액 부담
 - ※ 실증특례·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, 사고 책임은 100%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,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

- 지원절차 : 제출서류 기반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확정 통보 후 지원금 지급



- (제출서류) 책임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증명서류 각 1부

No	제출서류	제출형태	비고
1	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신청서	PDF/한글	서식1
2	책임보험 증권 및 책임보험료 완납 증명서	PDF	관련 증명서
3	사업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통장사본	PDF	
4	재무제표(최근 3개년)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	PDF	국세청 홈텍스 출력분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	PDF	
6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조희 동의서	PDF	서식2
7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PDF	서식3
8	청렴이행서약서	PDF	서식4
9	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	PDF	서식5
10	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이전 협약서	PDF	서식6
11	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서식7

- ※ '외부기관 발급서류'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
- ※ 특구사업자별로 책임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지역특구법에 따른 보상한도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기간, 약관 등의 적절성 여부 확인 후 가입 必

■ 신청자격

가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

○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

- 공고일 기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며, 실증특례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결과보고서 :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지역으로 이전 완료 내용 포함

나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
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. 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-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·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
* 동일 대표자,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
-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
-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
-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: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■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해외실증지원은 기간 내 접수 必, 신산업 책임보험은 상시 접수
 - ① 해외실증 : 공고일 ~ 2025. 7. 17.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- ② 신산업 책임보험 : 공고일 ~ 2025. 9. 10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 수 처 : (28116)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
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03호, 기업지원단 글로벌사업화팀
- 문 의 처 : 조예진 선임연구원(043-270-2271, choyejin@cbtp.or.kr)
- 신청방법 (*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오프라인 접수 必)
 - (온라인) 충북TP 담당자 이메일 접수(choyejin@cbtp.or.kr)
 - (오프라인) 충북TP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V 유의사항

- 과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충북테크노파크 자체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하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 개별통보)
- 해외실증 비R&D과제 기업지원비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원
- 지원기업의 경우 과제지원을 통한 성과분석·관리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5년 간 성과 모니터링에 참여해야함
- 본 공고내용에 포함된 제공사항 외에 별도 추가사항은 선정기업에서 부담함
-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수정·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
-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
 -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이 확인된 경우
 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- 제출서류가 위/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
 - 사업 추진이 불성실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

붙임 :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해외실증지원 제출서류 1부. 끝.

사업신청, 용역, 구매,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,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(재)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(043-270-2950~2)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.

참고1

글로벌 실증거점(日 Shonan iPark) 소개

- (소개) 글로벌제약사 다케다(Takeda)가 사내 R&D센터를 대학, 외부 기업 등에 개방하며 만든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혁신클러스터



- (설립) 1781년 • (본사) 도쿄 • (매출) '22년 33조원 • (직원) 약 5만명
- 다케다는 온콜로지(암), 희귀질환, 신경정신질환, 소화기계질환 등을 주력분야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선도기업으로 일본 최대 제약사이자, 세계 20대 제약사

- (개소/위치) 2018년 8월 /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의
- (대표자) 후지모토 토시오(교토대 흉부외과 의학박사, 고베대 MBA)
- (규모) 부지 220,000㎡(약 6.6만평), 연면적 306,000㎡(약 9.3만평)
- (입주기업) 약 150개사('23.4월 기준)
- (주요 협력 프로그램)
 - (벤처 아카데미)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·벤처기업에 사업화를 위한 자금, 설비,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
 - (협업지원 온라인 매칭 시스템) 상호교류 촉진을 위해 매일 이벤트를 개최, 협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매칭(연구정보 공유 → 관심기업 발굴 → 상호교류) 지원



공유실험실



배양실



화학물 실험실



공유오피스

참고2 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

○ (집행 가능 항목) 사업비는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가입, 첨단재생바이오 해외실증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

- (집행불가) 다음 항목으로는 사업비 집행 불가

-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
-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·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
- 시설비·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
-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
-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
[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]

구분	내용	보조세목
보험료	·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가입 보험료	공공요금및제세
시험비	·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	일반수용비 등
컨설팅비	·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	일반수용비 등
재료비	·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(서비스)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도구, 데이터 등 구입비	재료비 등
외주 용역비	·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(서비스)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일반용역비 등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·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	일반수용비, 일반용역비 등 (자본적 경비 제외)
인건비	·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지급하는 급여 ※ <u>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</u> ※ 정부지원금의 50% 까지 계상 가능	보수, 일용임금 등

구분	내용	보조세목
지급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,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통역비 등으로 집행 	일반수용비, 일반용역비 등
여비· 체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·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• 해외실증기관 또는 해외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화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행사 또는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을 포함 	국내여비, 국외여비
광고 선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 제품(서비스)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	일반수용비 등
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,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•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	임차료
지원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•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·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• 시설비·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(특근매식비, 회의비, 사무용품 구입 등) 	-

* 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 등 서식 작성시 반드시 '보조세목' 기준으로 작성

참고3**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해외실증지원 과제 평가표**

- 첨단재생바이오 해외실증지원 과제평가는 기본요건과 적정성 평가로 구성
 - 기본요건 평가 : 휴·폐업 중인 기업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금융채무이행 여부,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등 신청자격사항 확인
 - 적정성 평가 : 대표자 및 경영관리, 기술성 및 사업성, 기여도 등

○ 적정성 평가 배점

부 문	항 목	배점
I. 대표자 및 경영관리 (30점)	1.1 대표자 전문성, 신뢰성	20
	1.2 해외시장 진출 의지	5
	1.3 경영관리수준	5
II. 기술성 및 사업성 (40점)	2.1 핵심기술 우위성/차별성	10
	2.2 연구/기술 역량	10
	2.3 해외실증계획의 우수성	10
	2.4 사업성	10
III. 기여도(30점)	3.1 지역사회 기여/영향력 (본사/지사/연구소 이전, 일자리 창출 등)	30
총 점		100
IV. 가점사항	4.1 중소벤처기업	5
	4.2 해당국가 법인(지사) 보유	5
	4.3 지역내 본사/지사/연구소 소재하고 있는 경우	5